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원시체육회

『수원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4. 27.
개정 2023. 2. 13.
개정 2024. 1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 체육진흥조례 제17조 제2항 및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4조에 따라 수원을 대표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및 국내외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을 응원하여 팀에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 체육발전 및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수원 스포츠 응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수원 스포츠 응원단"(이하 응원단)이라 칭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 응원단은 제1조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 응원.
2. 스포츠를 수원시의 문화상품으로 육성, 보급, 홍보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3.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
4. 수원시의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서 적극 참여.
5. 수원시의 문화교류 사업 참여.
6. 그 밖에 응원단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3장 구성

제4조(구성) 응원단의 구성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응원단은 집행부(단장, 부단장, 간사), 운영위원, 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응원단은 수원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3. 응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단원 위촉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장은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자 중 1인에 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부단장은 1명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추천자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추천·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5. 응원단 팀장 및 단원은 모집·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응원단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3. 02. 13.>
2. 집행부(부단장, 간사) 및 팀장,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 02. 13.>
3. 전임단장 및 팀장은 응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스포츠응원단의 활동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3. 02. 13.> <개정 2024. 12. 12.>

제4장 운영

제7조(운영비) 응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수원시체육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21. 0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 02.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